

#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S2BL)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6.20.(목) ]

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 입주자격 및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S2BL)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detre-gc.co.kr)에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 전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VAT포함)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기타경기 과천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비규제지역 (2023.06.20. 이전부터 계속 거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2023.12.20. 이전부터 계속 거주)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공공택지(공공주택지구 5년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청약 및 계약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점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24,07,01.(월)	24,07,02.(화)	24.07.03.(수)	24,07,10.(수)	24.07.22.(월) ~ 24.07.24.(수)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진행
장소	사업주체 견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 – PC: www.applyho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1번지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등은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대방건설	주식회사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백석동, 아이비프라자 5층)
법인등록번호	110111-	0757158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주)대명기술단건축사사무소	(주)나로이엔씨	(주)이린	(주)신화에프이씨					
감리금액	2,729,382,150	683,319,869	872,698,180	128,700,000					
v 가디그애O 가디를!!!이이	, 가기기애 가기하나이에 게이번경 드이크 조가되 시 이십 [다] (기 경이 번도 저사되지 아이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과천시 도시정비과 16799호(2024.06.1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경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S2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5~28층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총 740세대 중 일반공급 453세대, 특별공급 287세대
- [특별공급 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51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74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74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22세대, 생애최초 66세대 포함)]
- 입주시기: 2027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주택		주택형	약식	주택	택공급면적(	(m²)	기타	계약면적	선 세대별 총공급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최하층			
구분	관리번호	모델	(전용면적 기준)	표기	주거 전 <del>용</del> 면적	주거 <del>공용</del> 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m²)	대지지분 (m²)	세대수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세대수	우선배정 세대수	
민영 주택	2024 000249	01	059,9955	59	59.9955	23,9715	83,9670	95,5250	179,4920	44,3448	740	51	74	74	22	66	287	453	24	
一当	합계 740								740	51	74	74	22	66	287	453	24			
· 청	청약시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세대는 일반공급세대수에 포함되었습니다.																			

059.9955

※ 주택형 표시 안내

견본주택 등의 약식표기 59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원, 세대)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되	금		잔금
주택형	동호	충수	세대		<u> </u>		게극급	i(20 <i>/</i> 0)	1회(15%)	2회(15%)	3회(15%)	4회(15%)	20%
	라인별	01	 수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 시 (10%)	1개월 이내 (10%)	2024,10,15	2024,12,15	2026,02,15	2026,04,15	입주지정시
		1층	4	510,417,856	257,932,144	768,350,000	76,835,000	76,835,000	115,252,500	115,252,500	115,252,500	115,252,500	153,670,000
		2층	4	510,417,856	257,932,144	768,350,000	76,835,000	76,835,000	115,252,500	115,252,500	115,252,500	115,252,500	153,670,000
		3층~4층	8	510,417,856	274,832,144	785,250,000	78,525,000	78,525,000	117,787,500	117,787,500	117,787,500	117,787,500	157,050,000
		5층	4	510,417,856	291,732,144	802,150,000	80,215,000	80,215,000	120,322,500	120,322,500	120,322,500	120,322,500	160,430,000
	203동 1,2호	6층	4	510,417,856	300,232,144	810,650,000	81,065,000	81,065,000	121,597,500	121,597,500	121,597,500	121,597,500	162,130,000
	206동 1,2호	7층	4	510,417,856	300,232,144	810,650,000	81,065,000	81,065,000	121,597,500	121,597,500	121,597,500	121,597,500	162,130,000
		8층~10층	12	510,417,856	308,732,144	819,150,000	81,915,000	81,915,000	122,872,500	122,872,500	122,872,500	122,872,500	163,830,000
		11층~15층	20	510,417,856	317,132,144	827,550,000	82,755,000	82,755,000	124,132,500	124,132,500	124,132,500	124,132,500	165,510,000
		16층~20층	20	510,417,856	325,632,144	836,050,000	83,605,000	83,605,000	125,407,500	125,407,500	125,407,500	125,407,500	167,210,000
		21층~28층	32	510,417,856	329,932,144	840,350,000	84,035,000	84,035,000	126,052,500	126,052,500	126,052,500	126,052,500	168,070,000
050 0055	201동1.2.3.4호	1층	20	510,417,856	285,332,144	795,750,000	79,575,000	79,575,000	119,362,500	119,362,500	119,362,500	119,362,500	159,150,000
059,9955		2층	20	510,417,856	285,332,144	795,750,000	79,575,000	79,575,000	119,362,500	119,362,500	119,362,500	119,362,500	159,150,000
		필로티 3층 (204동1호, 205동4호, 207동1호, 208동4호)	4	510,417,856	320,432,144	830,850,000	83,085,000	83,085,000	124,627,500	124,627,500	124,627,500	124,627,500	166,170,000
	202동1,2,3,4호	3층~4층	44	510,417,856	303,232,144	813,650,000	81,365,000	81,365,000	122,047,500	122,047,500	122,047,500	122,047,500	162,730,000
	204동1,2,3,4호	5층	24	510,417,856	320,432,144	830,850,000	83,085,000	83,085,000	124,627,500	124,627,500	124,627,500	124,627,500	166,170,000
	205동1,2,3,4호 207동1,2,3,4호	6층	24	510,417,856	329,232,144	839,650,000	83,965,000	83,965,000	125,947,500	125,947,500	125,947,500	125,947,500	167,930,000
	207등1,2,3,4호	7층	24	510,417,856	329,232,144	839,650,000	83,965,000	83,965,000	125,947,500	125,947,500	125,947,500	125,947,500	167,930,000
	2000 1,2,0, 12	8층~10층	72	510,417,856	337,932,144	848,350,000	84,835,000	84,835,000	127,252,500	127,252,500	127,252,500	127,252,500	169,670,000
		11층~15층	120	510,417,856	346,732,144	857,150,000	85,715,000	85,715,000	128,572,500	128,572,500	128,572,500	128,572,500	171,430,000
		16층~20층	120	510,417,856	355,532,144	865,950,000	86,595,000	86,595,000	129,892,500	129,892,500	129,892,500	129,892,500	173,190,000
		21층~28층	156	510,417,856	359,932,144	870,350,000	87,035,000	87,035,000	130,552,500	130,552,500	130,552,500	130,552,500	174,070,000

- ※ 상기 금액은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문양대금 관리계좌 (계약금, 중도금, 진	금)	광주은행	1107-021-715535	코리아신탁(주)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잔금
주택형(m²)		결과나 확성하다	계약시	입주지정일
59		6,350,000	1,000,000	5,350,000

금융기관

■ 바그미 하자 나비게지

■ 글꼬니 찍 6 남구계되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계약금, 잔금)	광주은행	1107-021-715557	코리아신탁(주)

## 2 특별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무주택

요건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신고일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구분 처리방법 공급기준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 건은 부적격 처리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 건은 무효 처리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 건이 유효 같은 주택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무주택세대주 요건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1순위 지역별 청약예치금액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퍼센트 범위): 51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퍼센트 범위): 74세대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태아, 입양자녀 포함)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퍼센트 범위) : 74세대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3퍼센트 범위): 22세대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9퍼센트 범위) : 66세대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괴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

▶이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지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구 분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예치금액

청약통장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재(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청약관련 신청자격

그 밖의 광역시

■ 일반공급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 –			0 122 20 1 1				
H)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60㎡이하	<ul> <li>전용면적 60㎡ 이하: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li>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 · 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및 제10조 1항[별표2]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지연'은 인주자무진공고익 현재 주택공근시천자이 주민들로표에 따르 거주지역은 막한								

## 4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금액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501,552,800,000원	제 01212024-101-0002200 호

예금주

■ 입주예정일: 2027년 5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멸종위기종 서식지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각종 파업(화물연대, 건설노조 등), 원자재 수급지연(국제 정세 등으로 인한 지연 등)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양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괴하여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을 초괴하는 날로부터 입주가능일까지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 계약자에게 지체상금을 지불하거나 이를 분양 잔여대금에서 공제합니다.

•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기길 요청할 경우 사전 공지를 통해 앞당길 수 있으며 납기일이 미도래 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영수증,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부과·징수기관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래 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부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별도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며 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계약자는 아파트 보존등기 접수일과 분양대금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60일 이내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이전 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피해 및 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6 주택의 청약신청 방법

※ 창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공동인증서를 신청점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청약 접수 시간 : 본 주택 청약 접수기간 내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성착용성 시킨트웨에 취ェ이어	인디기	전 행성 기업 및 중중인증시 필급									
1	+										
인터넷 청약 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공동인증서 로그인)	⇒	2 청약 신청에서 APT 청약신청 선택									
3 APT 특별공급/1순위/2순위 선택 청약 신청하기	⇒	4 주민등록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5 청약 신청하기	⇒	6 주택선택 및 유의사항 확인									
7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8 청약자격 확인 및 입력									
9 청약신청 내역확인(전자서명)	<b>⇒</b>	10 청약완료									

가는데,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시형은 '청약하'마마' 홈페이지(www.applytome.co.)서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산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형약평관은 본 주택 당첨 후에는 제약하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활가능 하입니 이 점 양자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평장 기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단(병명) 기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점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인증서 (요국위(당점, 성, 등 로스(약점, 또는 용) 시한(약동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4) 5)

ТΞ	파인시 및 경기도	한인당되시	시골국일시	84/1948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59 m²
■ 2수위 청얀 반번				

모집공고일까지 청약통장 가입 ightarrow 인터넷뱅킹신청(공동인증서를 발급) ightarrow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APT 청약신청에 접속 후 접수절차에 따라 청약접수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약신청내역조회

2) APT / 청약신청내역조회 3)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동인증서 선택 비밀번호 입력 ) APT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선택 3)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4) 공동인증서 선택 비밀번호 입력

■ 당첨조회

3) 세대구성원 동의 4) 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

■ 청약사전관리

## 대표버증

	-11-11-11-11-11-11-11-11-11-11-11-11-11		D=   v    v
1688-500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1 디에트르 모델하우스	http://detre-gc.co.kr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7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과천

겨보즈태 의치

-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 전문 및 고객센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면적: 133.659.6493㎡ ■ 용도 : 공동주택 ■ 위치: 경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S2BL ■ 규모: 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최고 28층 8개동 총 7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견본주택 퍼스티지 안양소방서 안양시청 현장 |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874-1 견본주택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1

변 1688 · 5006

아파트 총 **740**세대 | 59m²